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9763, 2013다49770, 2013다49787 판결
[2013다49763(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2013다4977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확인2013다4978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9763, 2013다49770, 2013다497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나2828, 2011나18069, 2012나31496 판결

전 문

원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윤석상, 손형주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상고인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손교명, 곽병철, 이마리, 채한식, 정원석, 함영업, 안종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나2828(본소)2011나18069(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나3149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또는 M, N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또는 M, N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존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분할 전의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O이 사정받았고 승계취득 등 망 P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O을 순차 상속한 독립당사자 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이고, 따라서 망 P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즉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반소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수동적 당사자가 능동적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하여 참가소송의 형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원고나 피고도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656 판결 참조). 한편 본소의 소송 계속은 반소의 제기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반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후에는 그 본소에 해당하는 참가신청이 각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 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면서도 나아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것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반소의 소송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의 당부(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 부분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